



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신용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. 신용거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검토필 번호 : 26-00486-511 (심의일 : 2026.03.30)

[신용거래용자] 핵심설명서

1 신용거래 개요

- 신용거래용자란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신용거래 기간 중에는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(연속재매매)이 가능합니다.
- 신용거래용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**담보유지비율 140% 이상이어야 하며, (해외증권담보 신청 시 170%, 대주만 거래 시 120%,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거래 시 105%)**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**납부**하여야 합니다. (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만 납부 가능)

2 신용거래의 위험성

- 신용거래용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**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** (4. 투자사례 <예시1> 참고)
 -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**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.**
 -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, 수량 산정 시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의 -15% 또는 -20%로 종목등급별 차등 적용되며 임의처분 가격은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어 임의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. (4. 투자사례 <예시1> 참고)
- ※ 고령투자자(65세이상) 및 투자경험이 적은 투자자의 경우,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.

3 투자자 유의사항

- 회사의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 통지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**투자자는 주소 · 사무소 등 연락장소 ·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**
-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신용거래용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내의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 · 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국내 주식의 경우는 임의상환 시 한국거래소에서 장개시 동시호가에 처분됩니다.
- 투자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신용거래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각 금융투자회사의 **신용거래용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**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→ 전자공시시스템 → 전체메뉴 → 금융투자회사 공시 → 특정공시 → 신용거래용자이자율)
- 유통금융종목(증권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매수한 종목)의 **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사**할 수 있습니다.

● 유동성 위험

유동성 위험	중도해지 불가	중도해지 시 비용발생	중도해지 허용
	-	-	○
	신용종목매도상환 시 신용 담보 종목이 거래정지 등으로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보유현금보다 상환금액이 더 큰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며 미수금에 대한 미수동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(신용/대주 상환)		

○ 투자 위험등급: **1등급(매우높은위험)** : 당사는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6단계 투자 위험등급 중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을 감안하여 **1등급(매우높은위험)**으로 분류 하였습니다.

● 당사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

구분	고객투자성향	유의사항
1 등급 (매우높은위험)	공격투자형	- 시장 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선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,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함.
2 등급 (높은위험)	적극투자형	- 시장 평균수익률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,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수용
3 등급 (다소높은위험)		-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.
4 등급 (보통위험)	위험중립형	-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함. - 예/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일정수준 손실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
5 등급 (낮은위험)	안정추구형	-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.
6 등급 (매우낮은위험)	안정형	-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. - 일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

□ 민원처리,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0365) 및 홈페이지 (www.shinhansec.com)에 문의할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(**국번없이 1332**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담당부서 : 영업추진부 (대표번호 1588-0365)

* 거래 제비용(수수료, 제세금, 대출이자), 상환정산차금은 고려하지 않음(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)

* 국내 주식의 경우 반대매매 시 한국거래소에서 장개시 동시호가에 처분

<예시1> 투자원금 400만원, 신용융자금 600만원, A종목 1,000주를 주당 10,000원에 매수, 담보유지비율 140%, 현금 200,000원

날짜	주식가격	계좌평가금액	담보비율	비고
D-1일	8,500원	8,700,000원	145%	
D일 장종료	8,000원	8,200,000원	136%	추가담보 납부 요구
D+1일	8,100원	8,300,000원	138%	최종담보부족액 10만원
D+2일 (반대매매일)	매도가격 8,100원 대비 15% 하락한 가격(6,890원)으로 산정한 임의처분수량 : 65주 = $\frac{(6,000,000 * 1.4) - 8,100원 * 1,000주 - 200,000원}{(6,890원 * 1.4) - 8,100원}$			
	매도가격 8,100원 대비 20% 하락한 가격(6,480원)으로 산정한 임의 처분수량 : 103주 = $\frac{(6,000,000 * 1.4) - 8,100원 * 1,000주 - 200,000원}{(6,480원 * 1.4) - 8,100원}$			

● 매도가격 = 전일종가 대비 15% or 20% 할인된 가격으로 종목등급별 차등 적용됨.

A/B/C 종목 : 전일종가 * -15 %, D/E/Z종목 : 전일종가 * -20% 적용됨.

● 임의처분수량 103주 6,48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 처분금액은 약67만원(103*6,480원)으로 담보부족금액(10만원)의 6.7배수준, 투자원금(103*4,000원)412,000원 대비 -362,560원 손실(88%)기록됨.

● 임의처분수량을 산정 시 매도가격 (-15% or -20%)으로 산정되었으나 임의처분수량이 하한가(-30%)로 체결될 경우 담보부족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, 당일 종가로 담보부족 산정 시 담보부족으로 재 산정될 수 있음.

구분	내용					
신용거래 보증금률	구분	보증금률		용자비율		
	현금징수형	A,B그룹 : 총액 45% (현금 45%)		55%		
		C,D그룹 : 총액 50% (현금 50%)		50%		
	혼합징수형	A,B그룹 : 총액 45% (현금 22.5%)		77.5%		
		C,D그룹 : 총액 50% (현금 25%)		75%		
대용징수형	A,B,C,D그룹 : 총액 60% (미수계좌인 경우 미수변제 후 대용사용가능)		100%			
신용대주매도	총액 100% (미수계좌주문 불가)		0%			
용자한도	<신용점수별 및 그룹별 신용/대주한도>					
	신용점수		신용/대주한도		비고 대주의 경우 성숙투자자만 해당되는 한도이며, 초기투자자, 경험투자자의 경우 별도 한도 사용	
	700점 이상		20억			
	650점 이상 ~ 699점 이하		10억			
	649점 이하		불가			
	그룹	A그룹	B그룹	C그룹	D그룹	E그룹이하~
	신용/대주한도	20억	20억	15억	3억	불가
	☞ 대주 초기투자자 3,000만원. 경험투자자 7,000만원.					
	☞ 고객신용점수에 따른 신용/대주 한도는 종목 그룹별 신용/대주 한도보다 우선 적용.					
	담보유지비율	140% (당일종가로 평가), 해외증권담보 신청 시 170%, 대주만 거래 시 120%,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거래 시 105%				

상환 기간	- 유통, 자기용자: 최초 120일, 연장조건 충족 시 1회 60일씩 연장가능 (최장 연장기간 제한 없음) - 유통대주: 최초 90일, 연장조건 충족 시 90일씩 연장가능 (최대 3회 연장가능. 단, 연장 포함 전체 상환 기간은 360일로 제한) ※ 연장 신청은 만기D-4영업일부터 D-2영업일 08:20~18:00까지 가능
추가납부기간	담보부족 발생일(D) + 1일 (반대매매일 D + 2)
신용거래용자 이자적용방식	신용이자율은 신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적용방식은 소급법을 적용 소급법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[용자이자 계산 예시 : 용자금 10,000,000원, 12/13 ~ 01/17, 대출기간 35일] ■ 정기이자징수일 (01/02) : $10,000,000 * 8.6\% * 18\text{일}/365 = 42,410\text{원}$ 징구 ■ 상환이자징수일 (01/17) : $(10,000,000 * 9.3\% * 35\text{일}/365) - 42,410\text{원} = 46,768\text{원}$ 징구 ※ 평년의 경우 365일,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※ 고객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등은 없음 ※ 매월 첫 영업일 징수(상환 시에는 상환일에 징수) ※ 해당 예시 이자율은 시행일 기준 이자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신용거래용자 이자율	- 당사 신용 및 유통대주 이자율은 홈페이지 www.shinhansec.com>> 고객센터>> 업무안내>> 대출/신용>> 신용용자/신용대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(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경은 별지파일로 확인) -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(상환 시에는 상환일에 징수) - 고객등급별 차등 적용 없음 - 연체이자율은 고객약정금리 + 2.9% 임 - 연체이자율 계산 시 '고객약정금리+2.9%'가 9.5%을 초과하면 연체료율은 9.5%로 정한다.
신용거래용자 가능종목 및 연장불가종목	-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종목 중 회사에서 정하는 종목 (관리종목, 투자경고/위험종목 제외) - 신용으로 매입한 종목은 연장조건 충족 시,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신청 전 당사가 정한 *연장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, 만기상환 하거나, 매도 청산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* 기타 회사가 정한 연장불가 종목의 예 : 위탁증거금 100%지정 종목, 액면가 미달, 시총 및 60일 평균가격 당사기준 미만 종목, 유동성 부족, 단기급등, 주식거래량 감소, 신용한도 초과, 매매정지, 정리매매, 상장폐지 예정종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기타 회사가 정한 신용공여 관리지침에 의거한 모니터링 종목 등
상환방법	-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가능 (매매에 의한 상환 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) - 대주매수 상환 시 예수금 부족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수동결 대상이 될 수 있음 - 상환시간 현금(현물) 상환 : 자기용자 오프라인 08:00 ~ 16:30, 온라인 05:00 ~ 23:00 유통용자(유통대주) 05:00 ~ 16:30

구 분	대출		신용	
	청약철회	중도상환	청약철회	중도상환
인지세 등 대출관련비용 반환	O	X	X	X
중도상환수수료*	X	X	X	X
신용정보기관 대출기록 삭제	O	X	—	—
약정 해지 (서비스 등록 해지)	O	X	O	X

◆ 대상 고객 : 일반금융소비자

◆ 행사 기한 : 대출(신용)서비스 등록일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

ex) 9월 1일 대출(신용)서비스 등록 시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(단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영업일까지顺延)

◆ 행사 방법 : 대출성 상품의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, 원금 등 관련비용을 모두 반환

◆ 의사표시 방법 : 영업점 내점 또는 전화 신청 (신청서 작성 필요)

※ 신용거래의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비용 반환 없음

※ 신용거래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대출기록을 보고하지 않으므로 당사 신용 약정만 해지됨

※ 중도상환의 경우, 별도의 약정 해지(서비스 등록 해지) 필요 함

[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권리]

위법계약의 해지

- **금융소비자**는 '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'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,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"1 년" 이내의 기간에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"5 년" 이내)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대상상품 :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
 - 진행절차 :
 -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
 - ② 회사는 **"10 일"**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고(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31 조제 4 항에 따른 예외가능) 거절 시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
 - 유의사항 :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

자료의 열람 요구

- **금융소비자**는 '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'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진행절차 :
 - ① 열람의 목적, 범위, 방법등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
 -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**"6 영업일"**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
 - ③ 회사는 **'6 영업일'** 이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
 - 유의사항 : 단, 회사는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

청약의 철회

- **일반금융소비자**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 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**계약의 청약**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**대출성 상품** :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**14 일** (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이내
 - 대상상품 : 신용거래, 주식담보대출, 청약자금 대출 등
 - 효력발생 :
 - ①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또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(1588-0365)에 전화로 신청하고,
 - ② 계약에 따른 금전, 재화등과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한 이자를 반환하고,
 - ③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 3 자에게 지급한 인지세 및 관련비용 등을 모두 반환한 때
-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(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전, 재화등과 이자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)로부터 **3 영업일 이내**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받은 금전, 재화등(대출성 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)을 반환(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회사가 부담)
- 단,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신청할 수 없음

□ 설명의무 이행 및 고객확인

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용거래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설명 의무이행 확인]

본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고객에게 교부한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한투자증권 _____ 지점(센터) ☎: _____

직위: _____ 직원명: _____ (서명)

※ 설명서에서 사용된 금융용어 중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

QR 코드를 찍으세요. 금융감독원 **FINE** 에서 제공하는

금융용어사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「금융용어사전」

금융감독원 FINE web page



※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